

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

[시행 2020. 1. 16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36호, 2020. 1. 15., 일부개정]

제1장 총칙삭 제

제1조(목적)

제2조(정의)

제2장 안전모삭 제

제3조(정의)

제4조(성능기준 및 시험방법)

제3장 보안경삭 제

제5조(정의)

제6조(성능기준 및 시험방법)

제4장 보안면삭 제

제7조(정의)

제8조(성능기준 및 시험방법)

제5장 <삭제 2020. 1. 15>삭 제

제9조 삭 제

제10조 삭 제

제6장 보칙삭 제

제11조(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)

제12조(재검토기한)

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

[시행 2020. 1. 16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36호, 2020. 1. 15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산업안전과), 044-202-7733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9조제1항과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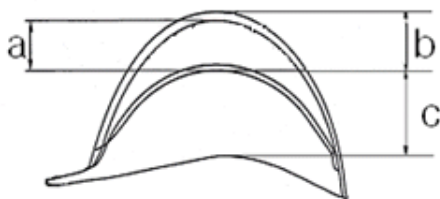
제2조(정의)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과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,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호구의 안전·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(KS), 국제기준(ISO/IEC), 유럽규격(EN) 등을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하다.

제2장 안전모

제3조(정의)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보호구 안전인증 고시」 제3조제1항의 제1호, 제2호,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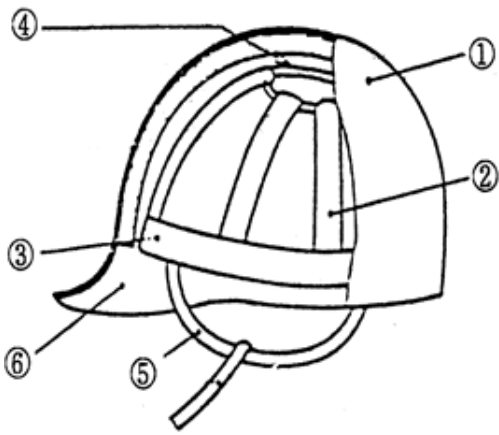
②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-1과 같다.



(a) 내부 수직거리 (b) 외부 수직거리 (c) 착용높이

[그림 2-1]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상세도

③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-2와 같다.



[그림 2-2] 안전모의 명칭

번호	명 칭	
①	모체	
②	착 장 체	머리받침끈
③		머리고정대
④		머리받침고리
⑤	턱끈	
⑥	챙(차양)	

제4조(성능기준 및 시험방법) 안전모의 성능기준은 별표 1,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.

제3장 보안경

제5조(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「보호구 안전인증 고시」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성능기준 및 시험방법) 보안경의 성능기준은 별표 2,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에 따른다.

제4장 보안면

제7조(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「보호구 안전인증고시」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성능기준 및 시험방법) 보안면의 성능기준은 별표 3, 시험방법은 별표 3의2에 따른다.

제5장 <삭제 2020. 1. 15>

제9조

제10조

제6장 보칙

제11조(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)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.

- 가. 형식 또는 모델명
- 나. 규격 또는 등급 등
- 다. 제조자명
- 라.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
- 마. 자율안전확인 번호

제12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장관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0-36호,2020.1.15.>

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